

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5. 4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측량법」 및 「측량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대하여 정함(안 제2조).
- 나.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정함(안 제3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측량법」 및 「측량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없음
- 라. 기타
 - 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· 폐지 등 없음
 - (2) 입법예고 : 2007. 4. 6 ~ 4. 16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측량법」 제58조 및 「측량법 시행령」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위원장)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3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실비변상) 위촉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관광문화재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7조(회의록)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· 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 및 장소
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
4.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
5. 그 밖에 중요사항

제8조(운영규정)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측 량 법

제58조 (지명위원회) ①지명의 제정·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에 시·도지명위원회를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)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지명위원회를 둔다.<개정 1997.1.13>

②시·도지명위원회는 시·군·구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지명을 심의·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중앙지명위원회는 시·도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·결정한다. 다만, 심의·결정사항이 2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·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, 2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·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.13, 2006.12.20>

③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된 지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개정 1997.1.13>

④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기능·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지명위원회의 기능·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측량법 시행령

- 제35조 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시·군·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1997.12.9>
- ②시·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(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가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 <개정 1997.12.9>
- ③시·군·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자가 된다. <개정 1997.12.9>
-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·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 이상으로 하고, 시·군·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 이상으로 한다.